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10. 20.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5년 8월 25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 다. 회부일자 : 2005년 9월 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년 10월 17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정근)

가. 개정이유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 내용 중 해당 사항을 서울시 준칙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 지원사업인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중단하고 녹색주차마을 담당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 강화신설(안 제2조)
 -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발견 시 1시간 초과 간주를 4시간 초과 간주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되 가산금 부과 전 자진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둠.
 - 노외주차장에서 제2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 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하며 금지 수준은 1금지·2금지 또는 3금지인 경우 해당 금지의 주차요금율, 4금지 또는 5금지인 경우 3금지의 주차요금율 부과
-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주차거부) 대상 추가(안 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채납한 경우
-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 변경(안 제10조)
 -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함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은 제외(안 제15조)
-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25조)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보조의 방식 변경(안 제26조)
 - 공사 후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구청장이 공사 대행 방식으로 변경
- 공사비 반환 신설(안 제26조)
 - 공사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 시설 설치 시, 단 주차장 조성이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추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의 범위 이내에 납부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는 주차장 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 함.
- 안 제3조 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에는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함.
- 안 제21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함.
- 안 제25조에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26조에는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 안 제26조의 2에서는 주차장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공사비)을 반환하도록 규정.
- 비고 제6호 다 목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

하는 것으로 규정.

- 그러나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제2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삭제하고
- 제4조의 제목 중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 제4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로
- 제6조 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수정하고.
- 주차장 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용자금 보조의 반환을 위하여 「제26조의3(강제징수)」,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용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 수정하고, 주차장 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용자금 보조의 반환을 위하여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안의 제2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 현행 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 제4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로
- 제6조 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 「제26조의3(강제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용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5. 10.
제 출 자 : 박승석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 수정하고, 주차장 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융자금 보조의 반환을 위하여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안의 제2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 현행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 제4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로
- 제6조 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 「제26조의 3(강제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의 제2조 제1항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 현행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의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 제4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로
- 제6조 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 「제26조의3(감채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읍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개	수
행	정	의
안	견	견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법 제9조 제2항 및 법 제14조	①<삭제>
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		
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		
하 "공영주차장"이라 한		
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		
요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6		
항에 의한다.		
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
의 위탁관리)①법 제8조 제2		리)①
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		
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		
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
중)		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p> <p>..... 관리 수탁자가</p> <p>.....</p> <p>제26조의3(감제징수)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물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채납회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유사한 성격의 민간지원 사업인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 마을 담장허용기 지원사업에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아울러 조문중 관련 법조문 개정 등으로 수정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 강화·신설
 -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발견시 1시간 초과간주를 4시간 초과간주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 부과전 자진납부 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둠
 - 노외주차장에서 제2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 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하며 급지수준은 1급지· 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주차거부) 대상 추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3회이상 제납한 경우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
-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 변경
 -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함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중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보조의 방식 변경

- 공사후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구청장이 공사대행방식으로 변경
- 공사비 반환 신설
- 공사후 5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 목적과 관련없는 기타 시설 설치시, 단 주차장 조성이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 조례 내용증 반복 기술된 조항,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적용조항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자치구 관련조례정비 요청사항(주차계획과-10233호,2004.12.29),
담장허물기 사업확대 시행계획(주차계획과-7107, 2004. 9.18)

나. 예산조치 : 2005년 예산편성

다. 입법예고사항 : 2005.8.8~8.17(의견 있음)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첨부서류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입법예고 결과서 1부.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4조의”를 “법 제14조제2항의”로 한다.

제2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채납한 경우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표시”를 “표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 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부분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의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부동산가액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로 하며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를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 제6항의”로 하고,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를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유자 중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6조제1항 중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제25조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으로 한다.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없는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11조제1항의”를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나목 다음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써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 1 비고 제7호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의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제14조제1항 관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의한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14조제2항의.....</p>
<p>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p>	<p>②.....</p>
<p><신 설></p>	<p>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p>
<p>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p>	<p>1..... 4시간.....</p>
<p>2~10 (생략)</p>	<p>2~10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③구첨장이 설치한 노의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p>
<p>제3 조 (생 략) 1~7 (생 략)</p>	<p>제3조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0조(주차장의 표시)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p> <p>②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1~5 (생 략)</p>	<p>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p> <p>제10조(주차장의 표지)①..... 표지.....</p> <p>②.....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p>③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③.....</p> <p>.....</p> <p>.....</p> <p>..... <삭제></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상단에 영등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 제한차량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①.....</p> <p>.....</p> <p>.....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p> <p>.....</p> <p>.....</p> <p>.....</p>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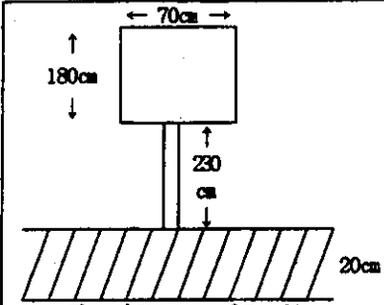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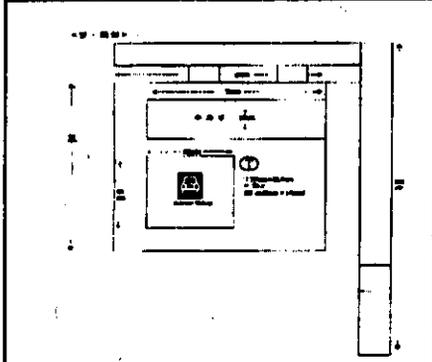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신 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제25조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p> <p>②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p>
	<p><신 설> 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 ①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없는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p> <p>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생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u>법 제6조제1항</u> 및 <u>법 제11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1.법 제7조제1항 및 <u>법 제12조제1항의</u>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6.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u>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자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u>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u>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10조제2항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70cm → ↑ 180cm ↓ ↑ 230cm ↓ 20cm</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가로 70cm×세로 180cm 높이 430cm ○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 ○ 색채 : 연녹색 바탕 ○ 글씨 : 흰색, 고딕 	<p><삭 제></p>
<p>(별지 제 2호서식) 노의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제4조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가로 80cm×세로 70cm 높이 380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글씨 : 고딕 - 색채 : 연녹색 바탕 - □주차장 : 균청색 바탕 흰색 - (↑)화살표 : 노랑바탕, 균청색 - □자동차 : 노랑바탕 균청색 	<p><삭 제></p>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고현순 의원	<p>○제2조2항으제1호의 4시간으로 개정시 이용하는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과다</p> <p>○제25조의 보조의 대상에 법정주차장이 있는 경우 법정주차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요구</p> <p>-법정주차장 기능유지 및 추후 주차장 기능유지 도모</p>	<p>○미반영</p> <p>- 거주자 우선주차의 부정주차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개정</p> <p>○미반영</p> <p>- 법정주차장이 있는 주택은 지원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주차장 기능유지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관리팀에서 관리 · 주차장기능유지는 관련 주차장법, 조례, 규칙 및 그린파크 사후관리계획에 의하여 관리함.